



제316회 정례회  
2012. 12. 13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광희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11월 12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매년 1500여명 수준으로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,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음.  
※학업중단 청소년 수 : 1,547명('09), 1,455명('10), 1,578명('11)
- 이에 따라,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(안 제3조)
- 학업중단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, 교육 및 후견인 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(안 제4조)

-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(안 제5조)
  - ※ 단, 위원회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「충청북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」로 대체 가능토록 명시
-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6조)
-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교육청, 대안교육기관,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것을 명시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「청소년 복지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추진경과
  -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의원 연구활동 과제 수행(‘11. 10~11)
    - 과제명 : “충청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”(이광희 의원)
  -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학업중단 실무담당자 간담회(‘11. 10.13)
    - 참석인원 : 18명(도청 7명, 도교육청 11명)

- 조례안 작성 및 집행부(2회), 행정문화위원회 협의(3회) ('12. 1~6)  
[해당 상임위가 행정문화위 ➔ 정책복지위로 변경(7월)]
-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대상 조례안 설명(9.10)
  - 참석인원 :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5명(이광희 의원 설명)
- 집행부 협의, 비용추계서 작성/ 도의회 입법팀 검토(8.21 ~ 10.5)
- 입법예고(10.18 ~ 11. 6)

## 나. 조례 제정 현황

-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5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
  - ※ 광주(2011-07-27), 대전(2012-06-15), 경남(2012-06-21), 경기도(2012-10-02), 전남(2012.10-12)

## 다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학업중단청소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-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“학업중단청소년 지원운영위원회”를 설치하되, 위원회 역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「충청북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」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후견인(멘토)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명시 하였으며,
- 교육청, 대안교육기관, 경찰청, 청소년관련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